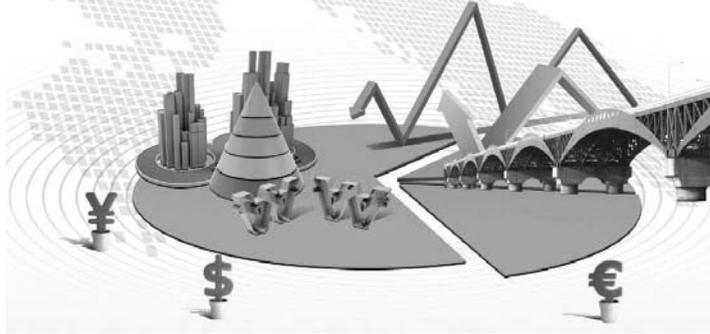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7)

자료제공 / 조달청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칙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Q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에 따른 조정을 산출은?

A

- ① 국토교통부 실적공사비의 분류
 - '04. 3. 8일부터 발표한 국토부 실적공사비가 비목군 분류 작성을 위한 기준 자료에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단, 국토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시장시공 가격이 적용된 경우에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②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비목군 분류 기준자료에 조달청 시장시공 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 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의 단가로서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단, 적용단가가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 예) · 석재판 불임에 바닥시공비, 벽체시공비 등과 같이 순수한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만 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노무비 비목(A)으로 분류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우레탄도막방수, 화강석 붙이기, 수성페인트칠 등과 같이 정부표

준품셈에서 순수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로서 조달청에서 별도 조사한 가격 → 재료비, 노무비 비목으로 분류

- 재료비에 공산품(D), 농림수산물(F)이 포함된 경우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각 단가에 2가지 이상 비목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 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도로표지판 설치, AL창호, 악세스후로와 등과 같이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또는 제작비 등은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③ 견적서 단가에 대한 분류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분류와 동일하게 순수한 재료비,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 구성된 견적단가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또는 제작비 등은 실적공사비비목으로 분류
 -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 세부내역에 해당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2가지이상 비목이 혼합된 단가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2개이상 비목 합계의 견적단가가 계약예규 68조 사항의 해당부분(G1 : 토목부분, G2 : 건축부분, G3 : 기계부분, G4 : 전기부분) 실적 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기타공사의 견적단가는 주공사의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예)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기 또는 소방공사에 적용된 견적가격은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재료비 포함 상차도 또는 현장도착도 단가는 주재료비의 비목으로 분류
- 예) · 모래, 자갈, 쇄석, 기층재, 항만사석, 화강석 원석→광산품

- 견치돌 및 화강경계석 → 공산품(석재품)
 - 가공화강석(잔다듬, 물갈기, 버너 등 포함) → 공산품(석재품)
 - 여러가지의 재료로 가공된 제품 → 공산품 (레미콘, 아스콘등)
- － 원재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상차비 또는 운반비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구역화물 상하차비 및 운반비는 기타비목 분류)

!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지수조정률 적용 시 비목군 분류 중 기타비목 (Z)으로 분류하던 비목군의 재분류 기준은?

A

- ① 시설공사의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로 구성되며, 재료비의 대부분은 공산품이 차지하므로 분류가 불분명한 재료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한다.
- ② 장비는 국산 및 외산장비로 구분하며, 품셈에 없는 외산장비는 외산장비(B)로 분류
- ③ 잡재료비, 기구손료의 분류기준
 - － 노무비, 경비 등의 00%로 계상한 잡재료는 공산품(D)으로 분류
 - －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비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D)으로 분류
- ④ 계측비는 분류 가능한 노무비, 재료비, 국산 및 외산장비 비목으로 분류
- ⑤ 전력비와 천공시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급수비는 전력, 수도, 도시가스 비목(E)으로 분류
- ⑥ 실적공사비 단가가 아니거나 노무비.재료비가 혼재되어 비목구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기타비목(Z)으로 분류

- 구역화물 상하차비 및 운반비, 보상비, 임대료, 사용료 등
- 시험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수수료 성격의 시험비(함수량, 지내력시험, 견적가격의 재하시험, 견적가격의 철강재 비파괴 검사 등)
- 견적가격의 폐기물처리비, 한전불입금
- 잠정금액이 아닌 경우로서 일위대가.견적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1식의 전기공사, 1식의 상수도 이설공사 등)

! 관련 규정 :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Q

순공사원가 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일 경우(제작설치비가 재료비에 있음)에 있어서 비목군 편성을 공산품(D)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Z)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 분류는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및 수입 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② 시설공사의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로 구성되며, 재료비의 대부분은 공산품이 차지하므로, 분류가 불분명한 재료비는 공산품으로 분류함
 - 노무비, 경비등의 00%로 계상한 잡재료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
 -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D)으로 분류
- ③ 기타비목(Z)는 노무비, 재료비 등의 비목군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927, '03. 08. 06

Q

지수조정률 산출시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비목군 분류시 별도의 비목군 분류 가능 여부

A

- ①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는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②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표된 평균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적용하고, 당해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 제비율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보험요율 적용기준〉

- ▶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직전조정일 '09.2.12이전)
 -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직전조정일 '09.2.12이후)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직전조정일 '09.2.12이전)
 -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직전조정일 '09.2.12이후)

! 관련 규정 :
· 국책사업과-1187, '05. 05. 16, 회계제도과-1407, '04. 08. 24
· 회제 41301-877, '03. 07. 21, 회제 41301-101, '03. 02. 18

Q

비목군 분류시 기계경비로 분류하는 기준

A

- ①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 ②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음.
- ③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비목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공사원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Z)비목군이 아니고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E) 비목군에 해당)
- ④ 당해 계약목적물인 경우로서 재료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해야 할 것이고, 만약 계약목적물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면 기계경비의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Q

공사계약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A

- ① 물가변동 조정시 비목군 분류는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기초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에 대한 비목군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함
- ②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1차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되, 노무비에 대하여는 노무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2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비목군 분류 및 계수 산출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가능
 - ㉡ 조달청에 물가변동 조정요청시 첨부하는 물가변동 자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송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처리 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556, '03. 05. 07

Q

1회 물가변동을 자체검토하고 2회 물가변동을 검토시 관련 법규상에는 1회 물가변동시 확정된 비목은 고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조달청 검토시 비목수정에 관한 문의

A ①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검토과정에서 수요기관에서 분류한 비목을 조정하는 것은 최초에 분류할 때의 착오사항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계약 이행기간 중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품목이 발생되거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

! 관련 규정 :
· 정부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 조정 실무

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준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의 물가변동 개정내용(’07.4.10)

① 개정 전 규정 (조정기준일이 ’06.12.31 이전인 경우)
○ 국산 및 외산장비로 구분하여, 입찰일 시점과 물가변동 시점의 품셈상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로 산정

② 개정 규정
○ 입찰일이 ’07. 01. 01 이후인 경우
-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대신에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기계경비 지수 산정
○ 입찰일이 ’06. 12. 31 이전으로 예정 조정기준일이 ’07. 01. 01 이후인 경우
- 국산장비 적용지수는 입찰일과 동일(변동 없음)
- 외산장비 적용지수는 입찰일의 외산장비가격 평균치에 입찰일과 조정기준일의 환율 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

③ 개정규정 단서조항
○ ’07년 표준품셈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고 개정된 규정으로 검토결과 조정률이 3%미만으로 반송되어 재신청 할 경우에는 ’07.1.1 부터 반송일 사이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Q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 지수 산정 기준

A ①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②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 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

